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3. 4. 9.

행정·재무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3월 8일 / 김병진 의원의 16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3월 25일

다. 상정일자 :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3. 4. 8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병진 의원)

### □ 개정이유

-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추어 2012년 8월 18일 법률 제11316호로 “작은도서관 진흥법”이 제정되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작은도서관 진흥 시책이 의무화되었음.
- 이에 따라 강서구민들의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지식 습득의 기회를 넓히고자 작은도서관이 개관되고 있어 이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작은도서관의 정의, 기능, 설치기준을 규정 함.
-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와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행·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 함.

- 최근 설치되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,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
- 「도서관법」 및 동법시행령
-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(2013.3.13. ~ 3.19) : 의견있음

라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양귀혁)

- 본 제정조례안은
  -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2012년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, 우리 구에도 작은 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된 것임.
- 2013. 3. 13 ~ 3. 19 까지 의견을 조회한 결과 강서구 교육지원과로부터 도서관의 정의 부분에 대한 수정과 운영자 중에서 주민센터 제외, 제13조(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)에서는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구립 작은 도서관장 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2013.3.19 접수되었음.

- 우리구는 현재 20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중에 있으며, 이중 7개 작은도서관은 리모델링하였고, 각동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기능과 역할이 독서공간에서 교육, 문화,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음.
  
- 종합의견
  - 「도서관법」 제4조 및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3조에 따르면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  
  -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를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짐.
  
  - 우리구는 동단위에 설치한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나, 향후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한 도서관과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정기적 도서교류, 도서목록 공동이용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.

## 5. 수정안의 요지

### 가. 수정이유

조례안 중 작은도서관 정의내용을 수정하고, 운영자 중 동주민센터를 제외하고, 운영자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를 포함하고, 작은도서관장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작은도서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료교류 등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.

나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2조 제1항에 “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.” 로 수정하고,
- 제2항 운영자 중 “주민센터”를 삭제한다.
- 안 제13조 제2항 제4조 “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”를 신설한다.
- 안 제19조 구립 작은도서관장 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며 제19조를 20조로 변경한다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7. 토론요지 : 생략

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※ 수정안 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# 수 정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작은도서관”이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쉬운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<u>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.</u></li> <li>2. “운영자”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<u>동주민센터, 「민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.</u></li> </ol> <p><b>제13조(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) ②</b>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서자격증</li> <li>2.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(독서지도사, 독서치료사, 학습지도사, 유아교육,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)</li> <li>3. 도서관 학교,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(신 설)</p> <p><b>제19조(시행규칙)</b>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작은도서관”이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쉬운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<u>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.</u></li> <li>2. “운영자”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「민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.</li> </ol> <p><b>제13조(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) ②</b>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서자격증</li> <li>2.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(독서지도사, 독서치료사, 학습지도사, 유아교육,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)</li> <li>3. 도서관 학교,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</li> <li><u>4.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</u></li> </ol> <p><b>제19조(구립 작은도서관장 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) ①</b>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,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<u>필요한 경우 구립 작은도서관장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b>②</b> 구청장은 <u>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 <p><b>제20조(시행규칙)</b>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